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안정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도모함(안 제3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 가.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연장(제39조의2)

4.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권혁률(2133-5027)